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규정명 : 학칙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요점
<p>제4조(설치 대학, 학부, 학과·전공 및 대학원) ① 본 대학교에는 사회복지대학, 심리·상담대학, 사회과학대학, 융합경영대학, 공과대학, 디자인대학, 문화예술대학, 미래융합인재학부, 교양학부를 둔다.</p> <p>② ~ ④ <생략></p>	<p>제4조(설치 대학, 학부, 학과·전공 및 대학원) ① 본 대학교에는 사회복지대학, 심리·상담대학, 사회과학대학, 융합경영대학, 공과대학, 디자인대학, 문화예술대학, 미래융합인재학부, 교양대학을 둔다.</p> <p>② ~ ④ <현행과 같음></p>	<p>직제변경</p>
<p>제10조(교수시수) ①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연 24시수를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교수시수 산정기준 및 보직교원의 책임시간 감면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10조(교수시간) ①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연 24시수를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교수시간 산정기준 및 보직교원의 책임시간 감면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상위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로 수정</p>
	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학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전 시행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</p>	